

전주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2가단14471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피 고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으로

담당변호사 백호영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전북 임실군 H, I, J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G은 피고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위 토지 위에 건설하려는 태양광발전소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

나. G은 원고 A, B과 K, L를 수분양자로 모집한 다음, 이들을 발전사업자로 한 발전사업허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에 이어 수분양자들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의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인허가 및 전력거래 계약 체결 추진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발전 사업자	발전소 명칭	발전소 부지	발전사업 허가일	전력거래계약 신청 접수일	개발행위 허가일
1	원고 A	M	H	2018. 10. 17.	2018. 11. 1.	2019. 2. 8.
2	원고 B	N	H	2018. 10. 17.	2018. 11. 1.	2019. 2. 8.
3	K	O	I, J	2018. 9. 27.	2018. 10. 5.	2019. 2. 8.
4	L	P	I, J	2018. 9. 27.	2018. 10. 5.	2019. 2. 8.

다. G은 2019년 3월경 Q에게 위 각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 A, B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관련 계약금으로 각 2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K, L는 계약금 지급을 거부하고 분양계약을 포기한 상태였다.

라. Q는 G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후 분양계약을 포기한 K, L를 발전사업자로 한 태양광발전소를 원고 C와 R에게 분양한 다음, 2019. 4. 25. 이들 명의로 발전사업허가 양수인가를 받아주었고(발전소 명칭이 원고 C는 'S', R은 'T'이다), 2019. 7. 6. 이들 명의로 한전에 전력거래계약을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 D은 2019. 12. 19. R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양수하였다(발전소 명칭은 'U'이다).

마.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거래계약 체결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전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면 용량검토를 거쳐 즉시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능한 경우 기술검토를 거쳐 접속공사를 설계한다.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면 한전은 접속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 상업발전이 개시된다. 1) 한전은 원고 A, B과 K, L의 전력거래계약 신청서가 접수되자 용량검토를 하였는데 그 결과 즉시 계통연계가 불가하자 2018. 10. 18.과 2018. 11. 6. 신청자에게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력거래계약은 현재 전력설비 연계용량 초과로 변전소 신설이 수반되는 대규모 공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승인 후 발전설비 연계까지 6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분산형전원 연계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 양해바랍니다'는 내용으로 계통연계가 장기간 지연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 G의 각 증언,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 1) 원고 A, B, C는 2019. 3. 27., 원고 D은 2019. 11. 25. 피고와 각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2) 피고 회사는 계통연계가 장기간 지연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한전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약정한 준공시점인 2020. 6. 30.경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위 각 계약을 취소한다.

3) 한편 피고는 위 각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넘기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여 원고들은 2021. 10. 18. 위 각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는 이행최고의 효력이 있고, 그 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계약 해제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해제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계약에 따라 계약금조로 지급받은 각 1천만 원을 각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각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에서는 공사기간을 정하되 ‘한전선로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고 계통연계의 지연으로 착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유책사유로 이행지체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통연계 지연을 알면서 계약상의 약정 준공시점까지 공사 완성이 가능하다고 원고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원고들도 계통연계 지연을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위 특약이 상호 합의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피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분양자이자 보증인으로서 피고와 공동 시행자인 Q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Q와 피고 사이의 금전관계만이 문제될 뿐이고, 원고들에게 반환할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관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Q는 2018. 2. 21.경 피고에게 전북 임실군 V 지상 100kW급 태양광발전소 11개소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20. 7.경 착공하여 2020. 11. 29.경 준공하였다.

2) 원고 A, B과 K, L 명의의 전력거래계약 신청서에는 발전사업자 전화번호로 위 각 명의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전력거래대금 통보 방법으로 휴대폰과 이메일 중 휴대폰이 선택되어 있고 그에 이어 위 휴대전화번호가 다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 B, C가 2019. 3. 27. 피고와 작성한 각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3)에는 ‘공사기간: 착공 2019. 3. 27., 준공 2020. 6. 30., ※ 한전선로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이하 ※ 아래 기재된 부분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특수조건으로 공사범위와 관련하여 발전 설비 구조물 설치와 전기공사는 피고가, 한전의 계통연계를 위한 작업은 발주자(위 원고들이다)가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2억 1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 아래에 ‘시공비 1억 6천만 원’이라는 기재가 별도로 존재하고,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을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3천만 원은 토지 이전 시에, 2차 중도금 3천만 원은 한전 연계 시에, 잔금 1억 3천만 원은 사용전검사 후 한달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4) 원고 A, B, C는 2019. 4. 1. 자신들이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 부지인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원고 D이 2019. 11. 25. 피고와 작성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 4)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하다. 차이나는 부분은 계약금이 2억 1,500만 원이고 시공비가 1억 7천만 원인 것, 공사기간 중 준공일이 2021. 6. 30.인 것, 특수조건의 공사범위에서 ‘한전 계통연계를 위한 작업’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계약의 취소와 관련 ‘한전의 지연으로 2021. 6. 30.까지 미완성될 시 발주자가 원하면 피고는 입금 전액을 환불(1개월 내)한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것 등이 있다.

나.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2, 증인 Q, G의 각 증언(다만, Q의 증언은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Q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한전은 원고 A, B 등의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접수하고 계통연계가 불가하자 6년 이상 장기간 지연될 예정임을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로 통지하였다. 그런데 전력거래계약 신청서와 그에 부수하여 함께 제출된 여러 서류에서 피고는 전력거래계약신청을 위임받는 사람 또는 공사업체로 표시되어 있지만 피고 회사의 일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점, 한전의 입장에서 전력거래계약 신청자인 발전사업자에게 용량검토 결과를 통보할 것인 점, 이 법정에서 G은 원고 A, B이 선로도 없이 돈 받아갔다면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도 피고와의 계약에 앞서 원고 A, B도 한전에 계통연계 가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한전으로부터 계통연계가 장기간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Q는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할 때 이미 한전에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한 것을 확인하였고 발전사업자들을 통해 결과도 확인했지만 한전에서 정확한 답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Q는 사업권 양수 당시 이미 위 임실군 W 소재 태양광발전소 11개소의 사실상 분양자로서(원고 A, B, D은 위 태양광발전소도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소의 건립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전력거래계약 추진 경과는 사업권 양수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직접 한전에 확인하지는 않고 발전사업자인 원고 A 등으로부터 전해 듣기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전은 이미 즉시 계통연계 불가 및 향후 소요 기간에 관한 내용을 통보한 상황이었으므로 한전이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③ 원고들과 Q는 피고 대표이사 X이 한전 관계자와 친분을 내세우며 2020. 6. 30.까지는 완성이 가능하다고 장담하였기 때문에 Q가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와 발전소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약서 중 이 사건 특약 기재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피고가 부동산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대로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특약의 기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면 이를 삭선하는 등으로 쉽게 삭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특약이 이행지체의 귀책사유 준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④ 원고 D이 2019. 11. 25. 피고와 작성한 계약서에도 이 사건 특약이 존재하지만 한전의 지연으로 약정한 준공기일이 경과된 경우 원고 D이 원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전의 지연’이라는 기재 부분에 주목해 보면 당시 원고 D, Q 및 피고 모두 한전의 용량 문제로 계통연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상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들 주장처럼 피고가 2020. 6. 30.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장담한 상황이라면 굳이 원고 D이 다른 원고들의 계약에서와 달리 준공기한을 2021. 6. 30.로 1년 더 늦출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다.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한전선로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이 사건 특약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계약 해제 시점인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당시까지 한전 계통연계가 불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유책사유로 이행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계약금 지급 여부(가정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Q는 G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G이 원고 A, Y에게 반환해야 할 4천만 원을 양수대금에서 공제한 사실, Q는 2019. 3. 28.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적요란에 ‘Z계약금’이라고 표시되도록 하여 피고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계약대금을 피고의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송금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Q는 피고에게 송금한 위 4천만 원은 원고들의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선정한 공사업자인 피고에게 공사 선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위 돈은 자신과 피고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돈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위 4천만 원이 원고들 중 누구의 계약금인지 특정할 수도 없는 점, 원고 D의 경우 Q가 위

4천만 원을 송금하고 한참 후에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4천만 원에 원고 D이 지급한 계약금이 포함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1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1) 위 과정 전체 또는 그 과정 중 일부분인 발전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와 한전 선로와의 접속을 관련 업계에서는계통연계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